

#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수급요건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제50조)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16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5일을 뺀 26일

**TIP** 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됨.

②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함

### 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 (같은 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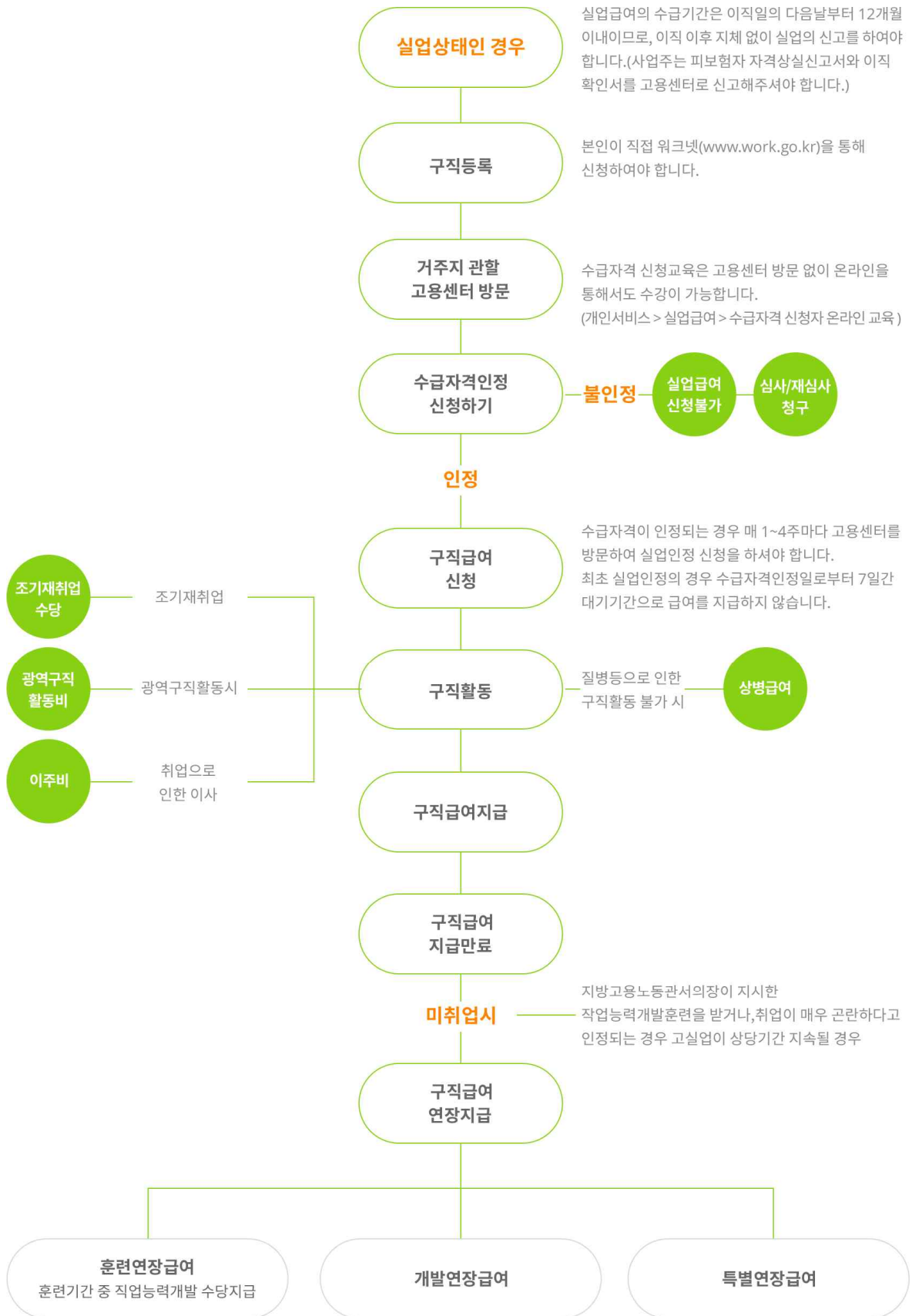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① 사업장의 이전
  -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전근
  -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지급기간과 액수

### •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 구직급여액수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50%×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들이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

#### · 확인 청구 대상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누락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고,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 청구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http://www.ei.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 · 이의제기 절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확인을 받지 못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심사,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음.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①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②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④ 다단계,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⑤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⑥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⑦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⑧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환경처리 업종)

### Q&A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고(1회 자진신고로 한정함), 추가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 벌칙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